제304회 임시회
2011.10.24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1년 10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13일

3. 제안이유

○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

○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는 한편,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꿔 도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정함(안 제2조)

나.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수렴 방법 등을 정함(안 제9조의2신설)

1)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 홈페이지, 학부모 총회,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도록 함

2)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설문조사, 총학생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

다. 소위원회 구성 시 일반학부모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제1항)

라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규정된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바꿔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. 3.18.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, 기존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였으며, 그 밖에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'에 따라 전체조문의 내용 중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한 것임.

○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에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을 <표1>과 같이 신설하여 소규모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높여 효율적인 학교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.

<표1>

구 분	현 행(영제58조)					조 례(안)				
	구성비율(%)	5명	6명	7명	8명	구성비율(%)	5명	6명	7명	8명
학부모	40～50	2	3	미구성	4	30～50	2	2	3	3~4
교 원	30～40	2	2		3	20～40	1~2	2	2	2~3
지 역	10～30	1	1		1~2	20～40	1~2	2	2	2~3

※자료 : 도교육청 행정예산과

- 안 제9조의2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, 학부모 총회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강행규정과

-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대표는 설문조사, 총학생회(대의원회)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, 학생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.

- 안 제17조에 학교급식이나 예·결산 등의 안건을 심층적이고,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모,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내실화 될 것으로 생각됨.

- 다만,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이해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조례개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, 또한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이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으로 의결권이 있는 것인지, 아니면 단순한 자문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

○ 그 밖에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규정된 중복 내용을 삭제 하고,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·보완하며,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전체조문을 정비하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관 계 법 령 발 췌

□ 초·중등교육법[법률 제10639호, 2011.5.19, 일부개정]

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·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8.31>

② 국·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·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.<개정 1999.8.31>

③ 국·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1999.8.31>

제32조(기능) ① 국·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05.3.24, 2008.3.21>

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
4의2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
5.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9.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10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11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12. **기타 대통령령,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**

③ 국·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[전문개정 1999.8.31]

제34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3184호, 2011.9.30, 일부개정]

제58조(국·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중 국·공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이하 제62조까지 "국·공립학교"라 한다)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(이하 이 절에서 "위원회규정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<개정 2000.2.28>

1.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: 5인이상 8인이내
2.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: 9인이상 12인이내
3.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: 13인이상 15인이내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신설 2011.3.18>

제59조의4(의견 수렴 등) ①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

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②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1.3.18]

제60조의2(소위원회)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,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·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1.3.18]